“여의도 리미티오 148”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여의도 리미티오 148”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과 사이버견본주택(http://limitihaut148.com/)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이버견본주택(http://limitihaut148.com/)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당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및 귀가 조치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800-0339)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28* 입니다.(청약자격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동주택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공동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군별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군별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공동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를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6월 07일(월)	06월 10일(목) 16:00시 이후	06월 14일(월)~06월 15일(화)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리미티오148 견본주택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영등포구청 건축과 – 16394호(2021.05.25)]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 공급 대상 : 지하 4층 ~ 지상 20층 1개동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32세대(별도 분양예정 : 오피스텔 16실, 근린생활시설 5실)
• 대지면적 : 전체 대지면적 1,382.5㎡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71.5494㎡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12,855.6067㎡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0,894.0170㎡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주차 대수 : 총 100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89대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 도
지하4층~지하1층	주차장, 부대시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지상 2층 ~ 지상 3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4층 ~ 지상 19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상 20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 부대시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MDF실, 방재실, 관리사무 및 창고, 재활용수거 창고, 계단실(ESC, ELEV 포함), 화장실, 카쉐어링 대기소 등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군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38A	68	38.4410	34.2377	72.6787	26.4764	99.1551	10.7355
2군	26C	16	26.1509	23.6833	49.8342	18.0115	67.8457	7.3032
3군	23B	16	23.8902	22.8746	46.7648	16.4548	63.2196	6.6721
	24D	32	24.3859	23.0189	47.4048	16.7959	64.2007	6.8103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 관리번호	군별	타입	호	공급 세대수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40%)				잔금 (50%)
						대지비	건물비	계	계약시	1회(10%) 21.10.20	2회(10%) 22.01.20	3회(10%) 22.04.20	4회(10%) 22.07.20	입주시
2021950027	1군	38A	1호~4호	4	4F	354,837,000	255,163,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305,000,000
				4	5F	356,698,440	256,501,560	613,20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61,320,000	306,600,000
				4	6F	358,501,710	257,798,290	616,30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61,630,000	308,150,000
				8	7F~8F	362,166,420	260,433,580	622,60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62,260,000	311,300,000
				8	9F~10F	363,969,690	261,730,310	625,70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62,570,000	312,850,000
				4	11F	365,831,130	263,068,870	628,90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62,890,000	314,450,000
				8	12F~13F	367,634,400	264,365,600	632,0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316,000,000
				8	14F~15F	369,495,840	265,704,160	635,20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63,520,000	317,600,000
				8	16F~17F	371,299,110	267,000,890	638,300,000	63,830,000	63,830,000	63,830,000	63,830,000	63,830,000	319,150,000
				8	18F~19F	373,160,550	268,339,450	641,50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320,750,000
				4	20F	378,628,530	272,271,470	650,900,000	65,090,000	65,090,000	65,090,000	65,090,000	65,090,000	325,450,000
	2군	26C	5호	1	4F	246,931,650	177,568,350	424,50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42,450,000	212,250,000
				1	5F	248,153,220	178,446,780	426,60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213,300,000

				1	6F	249,432,960	179,367,040	428,80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42,880,000	214,400,000	
				2	7F~8F	251,992,440	181,207,560	433,20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43,320,000	216,600,000	
				2	9F~10F	253,272,180	182,127,820	435,40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217,700,000	
				1	11F	254,551,920	183,048,080	437,60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218,800,000	
				2	12F~13F	255,773,490	183,926,510	439,700,000	43,970,000	43,970,000	43,970,000	43,970,000	43,970,000	219,850,000	
				2	14F~15F	257,111,400	184,888,6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221,000,000	
				2	16F~17F	258,391,140	185,808,860	444,20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222,100,000	
				2	18F~19F	259,612,710	186,687,290	446,30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44,630,000	223,150,000	
	3군	23B	6호	1	4F	210,110,040	151,089,960	361,20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180,600,000	
				1	5F	211,215,270	151,884,730	363,10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181,550,000	
				1	6F	212,320,500	152,679,500	365,0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82,500,000	
				2	7F~8F	214,472,790	154,227,210	368,70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36,870,000	184,350,000	
				2	9F~10F	215,519,850	154,980,150	370,50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185,250,000	
				1	11F	216,625,080	155,774,920	372,40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186,200,000	
				2	12F~13F	217,672,140	156,527,860	374,20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87,100,000	
				2	14F~15F	218,777,370	157,322,630	376,10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188,050,000	
				2	16F~17F	219,882,600	158,117,400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89,000,000	
				2	18F~19F	220,987,830	158,912,170	379,90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189,950,000	
		24D	7호~8호	2	4F	214,356,450	154,143,550	368,50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184,250,000	
				2	5F	215,461,680	154,938,320	370,40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37,040,000	185,200,000	
				2	6F	216,566,910	155,733,090	372,30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186,150,000	
				4	7F~8F	218,777,370	157,322,630	376,10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188,050,000	
				4	9F~10F	219,882,600	158,117,400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89,000,000	
				2	11F	220,987,830	158,912,170	379,90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189,950,000	
				4	12F~13F	222,093,060	159,706,940	381,80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190,900,000	
				4	14F~15F	223,198,290	160,501,710	383,70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191,850,000	
				4	16F~17F	224,303,520	161,296,480	385,60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92,800,000	
				4	18F~19F	225,408,750	162,091,250	387,50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38,750,000	193,75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약 1군 : 38A , 청약 2군 : 26C, 청약 3군 : 23B, 24D

■ 공통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38A, 24D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23B, 26C)은 견본주택 내 모형, 아이소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추가선택품목이 미포함 되어있습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유상옵션 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 위치 지정이나 구획 구분 및 구분 등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벽체중신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은 외관의 통일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 발코니확장을 적용하였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무료입니다.
-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시행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신용등급, 다호실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은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최대 3건까지 청약 가능함.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2건이상 중복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 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됨.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06월 07일(월)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06월 10일(목) 16:00시 이후	06월 14일(월)~06월 15일(화)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리미티오148 견본주택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우리은행 전 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06월 10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0년 06월 14일(월) ~ 06월 15일(화)	10:00~16:00	**리미티오148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404-161318	㈜반도건설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급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계약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2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202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체결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의 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인 서울시 영등포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및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금융기관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서 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대출 미신청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대출한도 부족 등)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후 대출기관의 융자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서류 제출 및 날인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 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무이자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통보 예정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Ⅳ 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적용사항	총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10.20.	입주시
38A	수입 주방가구	12,600,000	1,260,000	1,260,000	10,080,000
23B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26C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24D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유상옵션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504-161915	㈜반도건설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 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 자재발주 등 시공상의 문제로 실질적 시공착수시점 이후에는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선택품목은 분양 당시 기준 본 도시형생활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의 실질적 시공착수시점(1차 중도금 납부일) 이후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는바 계약 전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옵션 계약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기 옵션 계약도 부수하여 해제 또는 취소됨.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에서 가능하며, 계약금 완납 이후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양도인, 양수인이 부담한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시(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을"은 "갑"과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후 전매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검인 후 최종적으로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에 의거 분양권전매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 양수인"을"이 "갑"과 본 계약 및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전매 요청 시 명의도용 전매 등 부동산시장 질서 및 공급질서를 해하는 행위 방지 및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자 또는 전매매수인에게 전매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지 및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판단결과 분양대금 회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매에 부동의 할 수 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세무,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기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Ⅵ 기타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는 바,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주차장,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전시 및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매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근린생활시설 및 외부조경시설(공개공지, 자전거보관소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 이행하여야 함)
- 당해 건물의 시공상의 하자(준공도면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ㅠ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보수책임을 진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자는 시공사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 등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사업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비주거(근린생활시설)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대지 주변현황(계약자의 현장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분양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동영상 및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동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건축허가도면 및 모형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등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일러실은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함.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단지 외부 여건 사항

- 사업지 인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영등포구청 및 서울시청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동측에 영등포로터리(고가차도)가 위치하고 사업지 북측 중마루공원, 사업지 남측, 서측 및 북측에 공구상가단지가 위치함 따라 소음 발생,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영등포로터리(고가차도)는 2021년 12월 철거 예정에 있으나 해당 시행사업자(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도로, 기반시설, 단지별 건축공사 및 주택·상가 용지별 개별공사가 진행 될수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사업지 인접지역에 중마루공원, 지하철 환기구** 등 기타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부담이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 설치되어있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통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모집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주변 도로 (영등포로, 영등포로터리, 노들로, 경인로 등)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에 방음벽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시설, 녹지 등)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장 주변 중마루공원 등이 위치하여 인접세대는 연결녹지 및 보행자 산책로 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 확인 및 견본주택 비치된 모형도, 도면 등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허가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인근 유해시설 여부는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 사업지의 외부특화디자인, 마감사양,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조경, 기타 시설물 등의 내용을 본 사업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현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폭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모델하우스,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부지(공원,도로등)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공사 시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계단 단수 및 법면기울기는 변경될 수 있음.

Ⅷ 설계 관련 주의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외부특화마감 등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허가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적 및 건물높이 등 실제와 차이가 날수 있으며, 단지외부 도로,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등은 본공사 시 제외 구간임.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변경),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건축물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자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계약면적 외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기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단지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본 건축물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제연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및 외벽루버특화 마감이며 일부 면에는 금속 돌출 프레임이 설치되고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석재마감 시공 예정으로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의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부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피트층 및 1층 상가 주변으로 설치되며, 인접 호실은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에어컨 실외기는 복도 외부 발코니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입면 돌출 금속프레임으로 인하여 시선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 내 호실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DA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건축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층 주민공동시설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의 환기를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등이 돌출되어 미관이 저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단지 및 세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전기인입개폐기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복도 내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의 냉난방은 개별 냉난방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기준층 복도 말단부 및 측부의 발코니에는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3층~지상10층 복도 끝 발코니에는 비상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발코니의 피난 동선을 확보로 인하여 물건을 적치, 보관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는 입면분할창이 설치되어 있어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 및 외부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발코니, 복도에 가스배관이 노출시공 될 예정이며, 가스계량기는 세대외부 복도에 설치될 예정임.(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램프 측면에 발전기실 배기(DA)가 위치하여 발전기 초기 작동 시 그을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정전 시 또는 점검 시에만 발생)
-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저수조실은 지하4층에 설치되며 MDF실은 지하1층 및 감시제어반실(방재실)은 관리사무소와 같은 지상1층에 설치됨.
- TV공청 안테나는 수신방해가 없는 동 옥상에 설치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8층 EPS/TPS실과 지하, 지상 PIT 또는 옥탑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통신 상태에 따라 중계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전파상태, 인허가, 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변경 정산하지 않음.

■ 주차장

- 본 분양목적물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로 용도별로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통합관리가 원칙임.
- 차량 진출입구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바람.
- 단지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로의 납부는 입주자가 관리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댓수는 자주식 43대, 기계식 57대 총 100대 예정이며, 기계식 주차장은 RV급 이상 차량은 사용하실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 및 실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되어 사용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으로부터의 차량 진출입부 및 지하주차장 통로의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고, 주차면은 설비, 전기, 배관의 영향으로 통로보다 유효높이가 낮아 질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신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분전함 및 단자함 설치 위치 및 배치는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판단기준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신발장 등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됨.
-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38A타입 주방 식탁 위치 조명의 경우 모델하우스에는 DP로 적용하였으며 본 공사 시에는 매립등으로 시공 됨.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나머지 타입은 식탁 조명이 없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에는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침실,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됨.
-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디딤석, 주방상판 및 주방벽면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는 노출형 환기시스템(장비)이 매립 설치되며, 그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1층 승강기홀 및 공용부분의 마감재가 특화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기존 설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A/S 적용 및 점검이 불가함.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LG IOT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 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거실조명, 일괄소등, 난방, 시스템에어컨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오피스텔 네트워크 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 외부에는 환기유니트, 주방, 욕실 배기를 위한 배기구 및 보일러 연도가 돌출되어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에는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에어컨,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에어컨은 냉·난방 사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에어컨은 냉방용 제품이 설치되오니 계약 시 제품 모델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보일러실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주택형 38A, 24D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보일러실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창호하부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38A타입 주방 식탁 위치 조명의 경우 DP로 적용하였으며 본 공사 시에는 매립등으로 시공 됨.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나머지 타입은 식탁 조명이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유리칸막이는 연출될 것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한 근린생활시설 진입계획 및 출입구가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도로면에 면한 지상1층 상가 전면부분은 계단 또는 경사면이 형성되며,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 공사 시 계단단수 및 경사기울기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경사도로에 의한 접근으로 점포 간 바닥단차가 발생함.

■ **기타 유의사항**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비, 대지비 비율은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로 책정되었으며, 대지지분이 동일하더라도 대지비가 상이할 수 있어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또는 본 건축물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허가(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써 향후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컨시어지, 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건축허가 설계도면 확인 및 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로비, 공유주방 등)에 대한 운영 및 컨시어지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위탁업체 ㈜쏘시오리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2년간 주거서비스를 운영할 예정(단 위탁업체(법인) 및 상세 주거서비스는 협의 과정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으로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즉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의 기간이 종료한 시점 이후 운영업체의 운영지속여부를 포함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계약자(입주민) 또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있으며, 2년 후 부대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제반 비용 일

체는 입주민 혹은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운영비를 사업주체가 2년간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지원하며, 그 외 금액은 세대공통부과금과 사용회수별 추가비용으로 부과됩니다. 단, 이용률과 운영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대시설 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APP) 사용 시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추후 세대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구획 및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IX 기타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000,000,000,000원	제00000000-000-0000000호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정보통신감리	소방
회사명	㈜건축사사무소가람나라		㈜지케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29,000,000		85,8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반도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1800-0015	180111-0624311
시공사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1012호(문정동, 엠스테이트)	02-431-3002	110111-570180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limitihaut148.com/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일원

■ 분양문의 : ☎ 1800-033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